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18
----------	---------

제출연월일	2006. 4. 1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소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1조).
- 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임으로 삭제(안 제26조).
- 다.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안 제28조).
 - 현행 : 2분의1은 7. 16 ~ 7. 31일, 2분의 1은 9. 16 ~ 9. 30일
 - 개정 : 전액을 7. 16 ~ 7. 31일
- 라. 공매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규정 신설(안 제37조제3항)
- 마.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및 저가 담배소비세 규정 삭제(안 제56조)
 - 흡연용 권련 1갑당 담배소비세 510원→641원,
 - 판매가 200원 이하인 담배소비세→삭제
- 바. 무소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차 전환차량(부 칙)
 - '09. 12. 31까지→화물차로 과세, '10년→33%, '11년→66%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 ▶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786(2006. 2. 7), 도 세정과-1393(2006.2.8)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6. 2. 28 ~ 3. 19)결과 : 의견제출없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6조의2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
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
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중 “제39조제2항제3호”를 “제39조제2항제4호”로 하고, 동
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
이 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동호나목 내지 라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2,600원”을 “3,27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650원”을 “820원”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규칙 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균세를 말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 -----</p>
<p>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략)</p>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현행과 같음)</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p>	<p>②----- 1·2(현행과 같음) 3. -----</p>

현행	개정안
<p>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서 신설></p> <p>③(생략)</p> <p>제37조(납세의무자) ①·②(생략) <신설></p> <p>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생략)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2(생략) <신설></p> <p>3.(생략) ③·④(생략)</p> <p>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p>	<p>----- -----</p> <p>----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p> <p>제37조(납세의무자) ①·②(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 ----- -----.</p> <p>1·2(현행과 같음)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중전의 제3호와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p> <p>제56조(세율) ①----- -----.</p> <p>1. ----- 가. ----- 641원</p>

현행	개정안
<p>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켈련은 20개비당 40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p> <p>다. 제3종 엽켈련 50그램당 2,60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650원</p> <p>2. 썬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p> <p>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p> <p>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른 각 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p> <p>1. 켈련 : 20개비당 100원</p> <p>2. 각련 : 50그램당 100원</p> <p>③(생략)</p>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생략)</p>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 신설></p> <p>③(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삭제></p> <p>나.----- 1,150원</p> <p>다.-----3,270원</p> <p>라.-----1,150원</p> <p>2. -----1,310원</p> <p>3. -----820원</p> <p><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2(현행과 같음)</p> <p>3. ----- ----- -----</p> <p>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